

함께하면 힘이 되는
중소기업의 성장 파트너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소벤처기업부

KBIZ 중소기업중앙회

함께하면 힘이 되는
중소기업의 성장 파트너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개별 중소기업이 부족한 역량을 채우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협업 플랫폼으로서, 경제·사회 위기 극복 및
미래대응 방안을 함께 모색할 수 있는 네트워크 조직입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협동과 연결의 힘입니다.”

Contents

PART. I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1-1 협동조합의 의미 6 1-2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6
PART. II 공동사업과 지원혜택	2-1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할 수 있는 공동사업 10 2-2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활용할 수 있는 지원사업 11 2-3 중소기업(조합원)이 얻을 수 있는 이점 13 2-4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모범사례 14
PART. III 설립 방법과 절차	3-1 왜 중소기업협동조합이어야 할까? 18 3-2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합원(발기인)은 어떻게 모집하면 좋을까? 20 3-3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 절차 21 3-4 중소기업협동조합 관련 문의처 22



함께하면 힘이 되는
중소기업의 성장 파트너

중소기업 협동조합



PART

01

중소기업 협동조합이란?

- 1-1 협동조합의 의미
- 1-2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1-1 | 협동조합의 의의

정의

-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사회·문화적 필요와 열망을 이루기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한 사람들의 자율적인 조직 (국제협동조합연맹 ICA)

UN, 2012년에 이어 2025년 세계협동조합의 해 지정

- 지속 가능한 사회·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자본주의 경제의 부작용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서 중요성 인식
- UN, 모든 회원국 대상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 법제 검토 촉구

※ 국제협동조합연맹(ICA), 전 세계에 약 300만 개의 협동조합과 약 10억 명의 조합원(전 세계 인구의 12%)이 존재

1-2 |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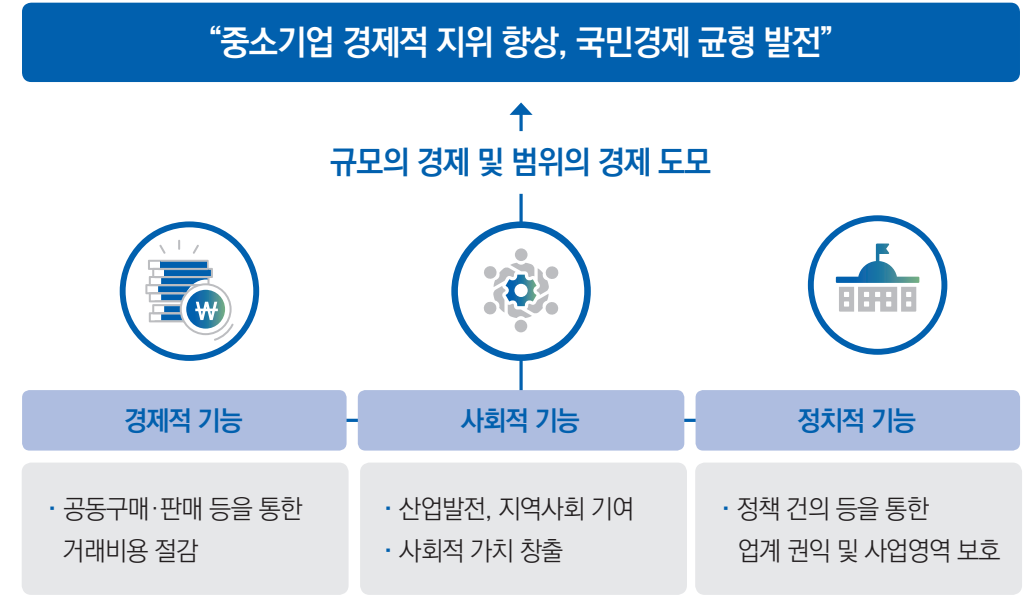
- 중소기업자가 모여 협동사업(공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만든 비영리법인
- 개별 중소기업의 한계를 효율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자조조직

최근 변화

- 정부·지자체의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요성 인식,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노력

정부	지방자치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계획 수립 •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중소기업자 지위 부여 (→ 중소기업 지원시책 활용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광역지자체 및 대다수 기초지자체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조례 제정

기능



주요 특징

법인격(권리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은 권리·의무의 주체 자격 보유 	의결권(민주적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원은 출자좌수 무관 1인 1표 행사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사업체) 	
유한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원은 출자액에 한하는 책임 보유 	가입/탈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원은 조합에 대한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움 	배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원별 사업 이용 분량 및 출자액에 비례한 배당 가능

유형

전국조합·지방조합	사업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사업 추진 및 업계 권익 대변을 위해 업무구역 내에서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모여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사업 추진을 위해 업무구역 내에서 조합의 목적 사업과 연관성 있는 중소기업이 모여 설립

함께하면 힘이 되는
중소기업의 성장 파트너

중소기업 협동조합



PART

02

공동사업과 지원혜택

- 2-1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할 수 있는
공동사업
- 2-2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활용할 수 있는
지원사업
- 2-3 중소기업(조합원)이 얻을 수 있는
이점
- 2-4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모범사례

2-1 |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할 수 있는 공동사업

		
<h3>공동구매</h3>	<h3>공동판매</h3>	<h3>공동상표·마케팅</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원·부자재를 공동으로 구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원이 생산한 제품을 조합을 통해 공동 출시·판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상표(브랜드) 개발 후 조합 또는 조합원이 생산한 제품에 부착하여 홍보 / 판로 확대를 위한 공동 마케팅
		
<h3>공동기술개발</h3>	<h3>공동시설 조성 및 운영</h3>	<h3>단체표준 제정</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시험연구를 통해 업계에서 활용 가능한 공동기술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류시설, 교육장, 설비 등 조합원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 구비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의 전문 분야에 적용되는 기호·용어·성능·절차·방법·기술 등에 대한 표준 제정
		
<h3>사업자금 대부</h3>	<h3>교육사업</h3>	<h3>수탁사업</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원 대상 사업 자금 대부 (어음할인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원사 임직원 및 관련 업종 재직자 대상 실무교육 사업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운영

※ 이 밖에도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수익사업 수행 가능

2-2 |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활용할 수 있는 지원사업

혜택 ① 정부·지방자치단체·유관기관 지원

중소기업지원정책 및 사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제1항 제5호

지원사업
자세히 보기



- 기업마당(bizinfo) -

조합도 중소기업 지위를 인정(21년 4월)받아
유관기관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 가능

〈 유관기관별 주요 지원내용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 정책자금 (시설·운영자금) 용자 ※ 협동화 자금* 별도 운영	· 채무 보증 및 채권 보험	· 기술 담보 보증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유통센터
· R&D 자금지원	· 특성화시장 육성	· 직접 생산 확인

*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공동으로 집단화·공동화·협업화 사업을 추진할 때 입지 구축 비용, 사업 투자 비용 등의 절감을 위해 지원하는 자금

과세특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0조(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1항



- ✓ 제품의 생산·가공·수주·판매·보관·운송을 위하여 취득하는 공동 시설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75% 경감

사업추진 경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5조(보조금) 제3항



- ✓ 정부, 지자체로부터 품질규격의 제정, 검사사업, 유통구조의 개선 사업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받을 수 있음

부지 및 시설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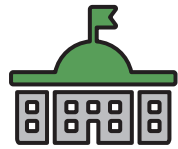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조(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력의무)



- ✓ 조합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의 시설을 다른 자에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사업목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부지 및 시설은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음

혜택 ② 중소기업중앙회 지원

현장 규제 발굴 및 해소



현장 규제 발굴

· 업종별, 사업별 조합 애로사항 의견 수렴
(간담회 등 개최로 '조합간 네트워크' 기회 제공)

현장 규제 해소 건의

· 글로벌 기준과 부합하지 않는
구시대적 규제 등 해소 건의

※ 정책총괄실 (T. 02-2124-3111~3113)

판로 확대



조합추천 공공구매제도 운영

· 조합이 추천한 업체가
공공기관과 수의계약
등을 할 수 있도록
적격 여부 등 심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추천

· 조합원의 제품·서비스가
경쟁제품 품목으로 지정
될 수 있도록 요건 및
타당성 등 검토 지원

적격조합 인증 지원

· 조합에 중소기업 간
경쟁입찰 참여자격을
부여함으로써 공공
판로 확대 지원

※ 판로지원실 (T. 02-2124-3241~3244)

단체표준 제정 및 운영



단체표준 제정 컨설팅

· 단체표준 제정 관련 전문가
컨설팅 비용 지원

적합성 평가 역량 강화

· 단체표준인증 등 적합성평가 수행조합
임직원의 교육 및 시험 응시료 등 지원

※ 단체표준팀 (T. 02-2124-3261, 3263, 3265)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운영 컨설팅



신규설립(연간 5일 이내)

· 설립요건, 절차, 준비서류 등 안내
및 검토 지원

조합운영(연간 7일 이내)

· 총회 개최, 조합 세무·회계, 정관·
규약·규정 제개정 등 지도

※ 조합정책실 (T. 02-2124-3214)

공동사업 활성화



혁신형 공동사업

· 디지털 전환, 환경규제
대응 등 혁신형 공동사업
추진 비용 지원

공동사업 전문인력

· 신규 채용된
공동사업 수행
인력의 인건비 지원

협동화 자금(운전자금)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협동화 자금 심사에
조합 추천

공동구매 전용보증

· 공동구매 대금 지급 보증으로 조합
구매력 강화 지원

공동사업 전문 컨설팅

· 공동사업 시장조사, 수익성 분석,
사업화 전략 등 종합 컨설팅 지원

※ 협업사업실 (T. 02-2124-3221~3224)

2-3 | 중소기업(조합원*)이 얻을 수 있는 이점 ☆☆☆

* 조합원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주체이고, 소유자이며, 이용자이자 운영자

비용절감 경영안정 미래대응

- ✓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 공동구매로 비용 절감
- ✓ 공동브랜드, 공동마케팅 등 활용으로 홍보비 절감 및 판로 확대
- ✓ 성능 향상을 위한 기술 등 공동연구로 연구비 절감 및 품질 향상
- ✓ 공동시설·공동장비 활용을 통해 운영비·관리비 절감
- ✓ 공동사업 기획 및 추진 등의 과정을 통해 업종·산업 변화에 공동 대응 및 권익 보호 활동 가능

2-4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모범사례 ☆☆☆

사례 ① 공동사업 활성화



사례 ② 지자체 협업

업무구역	조합명	지자체 지원내용
서울	시흥유통진흥사업협동조합	조합원사 홍보를 위한 LED 전광판 임대 설치 지원
부산울산	부산시기계공업협동조합	부산국제기계대전 개최 지원
대구	대구경북기계협동조합	대구시 수출역량 강화사업 지원
광주전남	여수오천산업단지식품가공업협동조합	오천산업단지 공동폐수처리장 폐수처리 지원
대전세종충남	대전세종충남복고압가스협동조합	고압가스 안전밸브 검사 장비 제작 지원
인천	인천종합어시장사업협동조합	전통시장의 공영주차장 건립 지원
경기	반월패션칼라사업협동조합	산업단지 근로자 출퇴근 버스 임차 지원
강원	강원도광고물협동조합	조합원 대상 기술 프로그램(편집, 디자인) 및 항공촬영 사용방법 교육 지원
충북	충북세종가구공업협동조합	조합 홈페이지 및 조합원사 조달등록 물품 G2B 연계 구축 지원
전북	전북가구공업협동조합	한국국제가구 및 인테리어산업대전 부스 참가 지원
경북	경북문경수퍼마켓협동조합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시설 개선 지원
경남	부산울산경남작물보호제협동조합	조합 공동물류창고 파레트 트랙 설치 지원
경기북부	경기포천가구산업협동조합	포천 가구공동전시판매장 건립 지원
제주	제주도수퍼마켓협동조합	골목수퍼 PB 상품 개발비 및 물류센터 기능보강 사업 지원



함께하면 힘이 되는
중소기업의 성장 파트너

중소기업 협동조합



PART

03

설립 방법과 절차

- 3-1 왜 중소기업협동조합이어야 할까?
- 3-2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합원
(발기인)은 어떻게 모집하면 좋을까?
- 3-3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 절차
- 3-4 중소기업협동조합 관련 문의처

3-1 | 왜 중소기업협동조합이어야 할까?

“시장·상점가 및 산업단지 내 단체와 비교해보세요.”

구분	상인회	입주업체협의회	중소기업협동조합 (상점가진흥조합, 산업단지조합 등)
법인격	- 임의단체 - 비영리법인	- 임의단체 - 비영리법인	- 비영리법인 수익창출 가능
설립요건	- 동의 요건 : 해당 시장·상점가 상인 전체의 1/2, 1/3, 1/4 이상 또는 100 ~ 250명 이상 - 출자금 요건 : 無	- 발기인 요건 : 산업단지 입주기업 4개 이상 : 산업단지 입주기업 90% 이상 회원가입 필수 - 출자금 요건 : 無 (→ 재정 자립계획 수립 필수)	- 발기인 요건 발기인 요건 부담 ↓ : 시장·상점가, 산업단지 입주기업 5명 이상 - 출자금 요건 : 4천만 원 이상 재정자립 사전 충족
가입대상	- 해당 시장·상점가 상인	- 해당 산업단지 입주기업 및 지원기관 대표자	- 중소기업자 상인, 입주기업 가입
사업영역	- 시장·상점가 관리	- 산업단지 관리	- 공동사업 사업영역 다양 - 시장·상점가, 산업단지 관리
지원혜택	- 시장·상점가 지원 사업	- 산업단지 지원 사업	- 정부 중소기업 지원시책 중소 지위 인정 - 시장·상점가 지원 사업 - 산업단지 지원 사업

“다른 협동조합과 비교해보세요.”

구분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법인격	- 협동조합 : (영리)법인 - 사회적협동조합 : 비영리법인	- 비영리법인 수익창출 가능
설립방법	- 협동조합 : 신고주의 - 사회적협동조합 : 인가주의	- 인가주의 운영능력 사전검토
설립요건	- 발기인 요건 : 5명 이상	- 출자금 요건 : 4천만 원 이상 재정자립 사전충족 - 발기인 요건 : 5명 이상
가입대상	- 자연인, 법인	- 중소기업자 중소기업 중심
사업영역	- 공동사업(금융 및 보험업 제외)	- 공동사업(금융 및 보험업 포함)
지원혜택	- 정부 중소기업 지원시책	- 중소기업중앙회 지원사업 지원혜택 다양 - 정부 중소기업 지원시책
주무관청 (검사여부)	- 기획재정부 (자율성 부여, 사회적협동조합은 필요시 검사)	- 중소벤처기업부 사후 관리 철저 (주기적 검사)
관리기관	- 無	- 중소기업중앙회 운영·관리 수시 지원



3-2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합원(발기인)은 어떻게 모집하면 좋을까?

▶ “자신의 사업장이 시장·상점가 혹은 산업단지에 속해있다면 **지역 이점**을 활용해서 조합원을 모아보세요.”

구분		상점가진흥조합(사업조합)	산업단지조합(사업조합)
조합원 자격요건		상점가에서 도매·소매·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자
동의요건		조합원 자격 있는 자의 2/3 이상 동의 필요 (단, 조합원 자격 있는 자의 50% 이상이 같은 업종인 경우 같은 업종인 자의 3/5 이상 동의 필요)	無
설립 요건	발기인 수	5명 이상	(좌동)
	최소 출자금	4천만 원 이상	(좌동)

▶ “**전국 각지 또는 지방 인근지역**에서 조합원을 모아보세요”

구분	협동조합		사업조합		
	전국조합	지방조합	전국사업조합	지방사업조합	
조합원 자격요건		중소기업자			
설립 요건	발기인 소재지	전국	특별(광역시)·시·도	전국	특별(광역시)·시·도 / 시·군·구
	최소 발기인 수	(제조) 50명 이상 (도소매) 70명 이상	(제조) 30명 이상 (도소매) 50명 이상	(제조) 50명 이상 (도소매) 70명 이상	(업종무관) 5명 이상
	최소 출자금	8천만 원 이상	4천만 원 이상		

※ 업무구역 및 조합 영위 업종에 따라 최소 발기인 수 요건이 상이하므로 담당자 확인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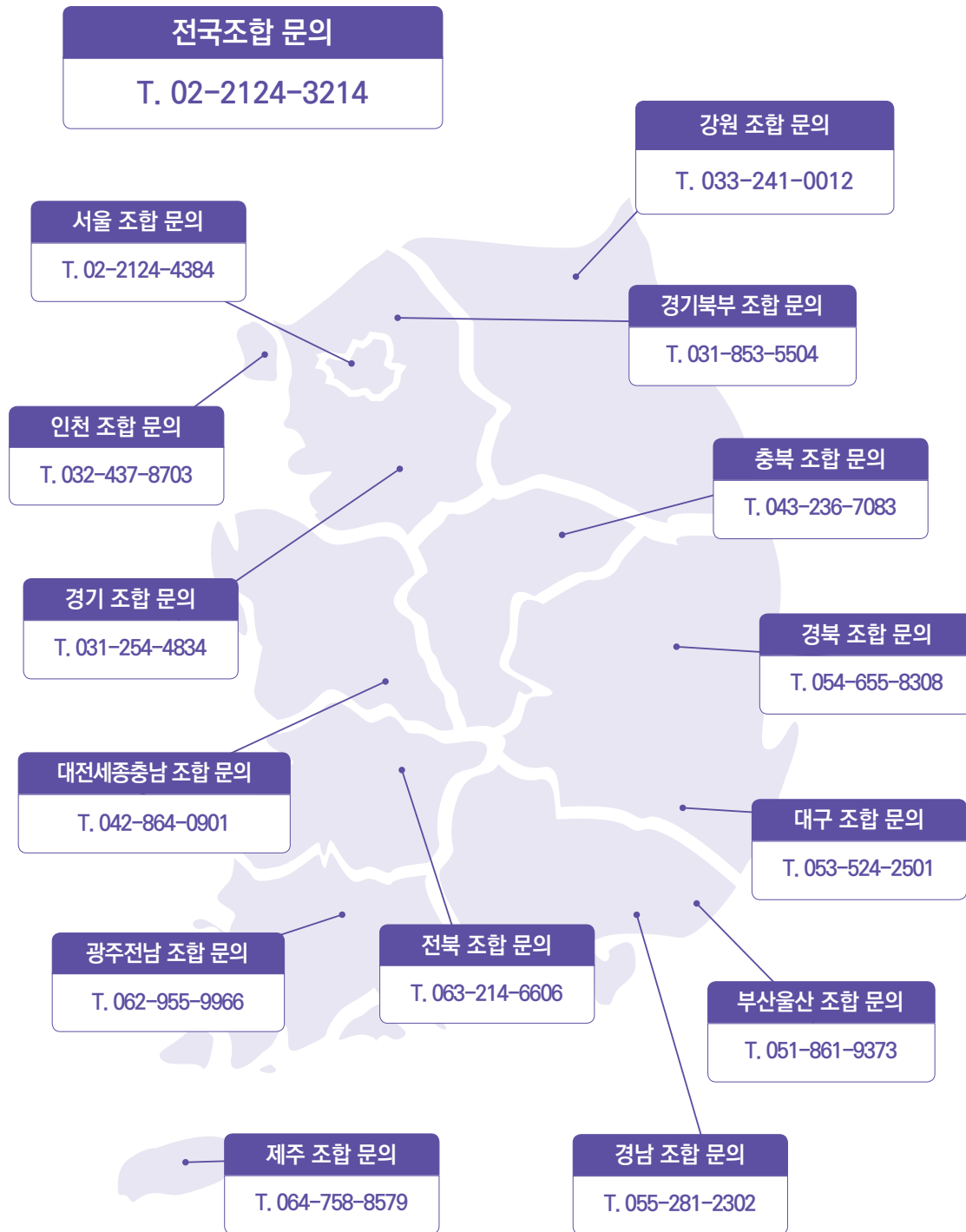
3-3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 절차



※ 발기인 모집부터 창립총회까지 최소 6주 소요 예정



3-4 | 중소기업협동조합 관련 문의처



※ 본부 및 지역본부 연락처

본부/지역본부	소재지	전화번호
조합정책실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30	02-2124-3214
서울	서울 마포구 성암로 189	02-2124-4384
부산울산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138	051-861-9373
대구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487	053-524-2501
광주전남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8번로 177	062-955-9966
대전세종충남	대전 서구 둔산서로 47	042-864-0901
인천	인천 미추홀구 미추홀대로 694	032-437-8703
경기	수원 영통구 광고로 107	031-254-4834
강원	춘천 춘천로19	033-241-0012
충북	청주 흥덕구 풍산로 50	043-236-7083
전북	전주 완산구 홍산로 276	063-214-6606
경북	예천 호명면 도청대로 201	054-655-8308
경남	창원 성산구 원이대로 362	055-281-2302
경기북부	의정부 평화로 516	031-853-5504
제주	제주 신대로 64	064-758-8579



함께하면 힘이되는

중소기업의 성장 파트너

**중소기업
협동조합**

발행일 2024년 5월

발행처 중소기업중앙회

전화 02-2124-3114

디자인·제작 (주)일흥피앤피